

# 전부(田賦)의 공공철학(公共哲學)

- 토지의 소유와 분배에 관한 12-13세기 중국의 경제담론 -

송 재 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

---

논문투고: 2015. 6. 30, 심사완료: 2015. 7. 19, 게재확정: 2015. 7. 19.

##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전부(田賦)에 관한 12-13세기 중국의 경세담론을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송대의 사상사는 흔히 이기·심성론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性理學)의 발흥기로 조명 받아왔다. 남송대 경세담론은 그러나 수백 종에 이르는 경서주석서, 다종의 역사서, 정부관료 및 지식인층의 주의(奏議)·시론(時論) 등을 통해 공공철학으로 심화되어 갔다. 구체적으로 토지제도 및 토지세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12-13세기의 사상가들은 사적소유와 분배정의 일반에 관한 정치철학적 입장을 정립해갔다. 이 논문은 토지의 소유와 분배에 관한 주희(朱熹, 1130-1200), 섭적(葉適, 1150-1223), 마단림(馬端臨, 약 1245-1322)의 상이한 입장을 분석하고, 섭적에서 마단림으로 이어지는 경세담론의 사상적 계보를 밝힌다. 궁극적으로는 성리학적 중농주의의 세계관과 공리주의적 방임주의의 역사관의 근저에 깔려 있는 정치철학적 차이점을 구명(究明)한다.

\*주요어: 전부(田賦), 토지세, 경세, 경세론, 공공철학, 『주례』, 『상서』, 남송, 사상사, 성리학, 주희, 섭적, 마단림, 유가경학

## 1. 소유, 분배 및 조세정의: 중국철학의 핵심주제

사적소유(→자유)와 분배정의(→평등)의 모순은 정치철학의 근본문제다. 양자의 적정균형(適正均衡)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근대 정치철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졌다.<sup>1)</sup> 적정세율에 관한 공적 합의 없이 통치의 정당성은 확보될 수 없다. 중국문명 역시 예외일 순 없다. 전세(田稅) 및 상세(商稅)를 둘러싼 조세정의의 담론은 중국철학사의 핵심주제였다. 중국의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에는 조세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전근대 중국의 관료행정이 및 사상가들은 치국(治國)과 경세(經世)의 담론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제도들을 발의·입안하고, 비판·검토하고, 수정·보완해 갔다. 그들의 경세담론에서 전부(田賦: 토지세, land taxes)는 특히 정부제정과 민생복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테마였다.

이 논문은 전부(田賦)에 관한 12-13세기 중국의 경세담론을 공공철학으로 재구성한다.<sup>2)</sup> 사상사의 상이한 입장과 세계관의 충돌을 조명하기 위해 성리학의 집대성자 주희(朱熹, 1130-1200), 영가학파의 대표 섭적(葉適, 1150-1223) 및 원대(元代, 1279-1368) 초기 『文獻通考』의 저자 마단림(馬端臨, 약 1245-1322), 이상 세 명의 역사인식과 경세사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복송대 신법당의 국가주의 개혁을 비판했지만, 토지의 사

1)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개인의 노동이 자연물에 결합되는 순간 배타적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논증했다 (John Locke, *Two Treatises*, 2.27.). 맑스(Karl Marx, 1818-1883)는 사적소유가 필연적으로 유산계급에 의한 무산계급의 착취로 귀결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두 입장의 대립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공산주의’(Communism)의 차이로 벌어졌다. 1970년대 이후 롤즈(John Rawls)와 드워킨(Ronald Dworkin) 등은 소유권의 합법적 제한을 주장한 반면, 노직(Robert Nozick)은 사적소유권 최대화의 논거를 제시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88-96, 107-127.

2) 공공철학은 영어의 “public philosophy”의 번역어로서 인간사회의 공적 현안 및 사회·경제·정치 제반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철학적 반성을 의미한다. 공공정책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공철학은 정치철학보다 좀 더 포괄적 의미라 사료된다. 일례로 법철학 및 정치철학을 탐구한 마이클 샌델은 흔히 스스로의 철학을 “공공철학”이라 규정하고 있다 (Michael J.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적소유와 분배정의에 관해서 주희는 섭적·마단림과는 현격하게 다른 입장에서 있었다. 이 논문에선 토지의 소유와 분배에 관한 주희와 섭적의 사상적 차이점을 밝히고, 섭적에서 마단림으로 이어지는 경제담론의 사상적 계보를 밝히려 한다.<sup>3)</sup>

동아시아 지적 전통에서 사적소유와 분배정의에 관한 정치철학적 담론의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른다. 특히 전국시대 (475-221 BC) 토지경병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는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일대의 논쟁을 야기했다. 『孟子』, 『周禮』 등 선진(先秦: 221-206 BC) 문헌에 산재한 정전제(井田制)의 이상은 농본의 사회에서 소유와 분배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한·당대(漢唐代, 기원전 206- 기원후 220; 618-907)를 거치면서 소유와 분배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다. 특히 당 중엽 균전제(均田制)의 와해와 더불어 양염(楊炎, 721-781)의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자 토지의 사유화 및 조세정의에 관한 논쟁이 새롭게 대두되었다.<sup>4)</sup> 당 중엽에 시작된 전부(田賦)의 공공담론은 북송대(860-1127)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이 입안한 신법(新法, 대략 1068-1125) 시기에 이르르면 절정에 달한다. 12-13세기 동안 남송의 사대부 집단은 왕안석의 국가주의 개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국가의 근본이념에 관한 경제담론을 꾸준히 이어갔다.<sup>5)</sup>

3) 남송대 전부(田賦) 논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소개하고 탐구하기 위해 이 논문은 마단림의 『文獻通考』 「田賦」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사회·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의 제반제도에 관한 유서(類書), 즉 백과전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文獻通考』는 단순한 제도사를 넘어 제도에 관한 논쟁이 정리된 경제담론의 지형도라 할 수 있다. 『文獻通考』의 전편을 통해서 마단림은 남송대 영가학파(永嘉學派)와 주희의 치국책(治國策)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전부(田賦)에 관해선 특히 섭적의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4) 당 중엽의 사회변화와 국가재정의 정책적 변화에 관해선 Denis Twitchett, *Financial administration under the Tang dynasty* (Cambridge Univ. Press, 1970), 특히 2-3장; 당 중엽의 정치사적 변동과 사회상의 변화에 관해선 Edwin ulleyblank,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2); 양세법의 실시과정과 조세항목에 관해선 李錦綉, 『唐代財政史稿』下(北京大學出版社, 2001), 609-676을 참조할 것.

5) 송대 경제담론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선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Conrad Schirokauer and Robert Hymes, eds.

이들의 경제담론은 정치, 행정, 사회, 경제, 군사 등 국가경영의 다방면에 관한 제도적 대안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의 일반적 문제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과연 불가피한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과연 정당하며, 현실적 실효성을 갖는가? 토지의 사유화와 빈민의 예속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토지점병의 폐해를 해소할 방안은? 국가에 의한 토지의 균등분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가? 토지세의 정당근거와 적정세율은? 바로 이러한 현실경제의 실질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후 당 중엽 이후의 사상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들의 입장은 전면적 토지재분배의 주장에서 자유방임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인구의 90프로가 농촌에 거주하던 전근대의 농본(農本) 사회에서 토지는 곧 사회·경제적 기초였다.<sup>6)</sup> 그런 현실에서 토지의 소유, 분배 및 토지세를 둘러싼 경제담론은 사회·경제적 기본원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철차였다. 중국의 철학자들은 경학의 전통 위에서 고대의 제도를 고찰하면서 당대(當代)의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지혜를 발휘했다. 전부(田賦) 논쟁은 곧 경제적 재원의 정당한 분배에 관한 정치철학적 숙의(熟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이론가 페티트(Philip Pettit)의 지적대로 규범성을 얻지 못한 정치, 합법성을 상실한 권위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sup>7)</sup> 그 점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남송대의 경제담론은 중화제국의 질서를 형성·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정치철학적 논쟁이면서,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기초를 세우는 헌정담론(constitutional discourse)이었다.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Introduction”을 참조할 것.

6) 송대 농촌사회의 현실에 대한 영어권의 탐구로는 Peter Golas, “Rural China in the Song,” *Journal of Asian Studies* 39.2 (1980), 291-325; 송대 농촌현실과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일본 도쿄학과의 연구로는 周藤吉之, 『中国土地制度史研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4); 송대 토지소유권의 실태조사로는 漆俠, 『中國經濟通史: 宋代經濟卷』(북경: 경제일보 출판사, 1999), 제6-7장; 송대 정부의 전부(田賦)의 수입에 관해선 汪聖鐸, 『兩宋財政史』(北京: 中華書局, 1995), 190-217을 참조할 것.

7) Philip Pettit,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Introduction,” p.1.

## 2. 전부(田賦) 논쟁의 지성사적 배경-고대에서 북송대까지

『尙書』, 『孟子』, 『周禮』, 『禮記』 등 선진유가 및 한대의 기본경전에는 소유, 분배 및 조세정의에 관한 정치철학적 성찰이 담겨 있다. 특히 『尙書』 「禹貢」 편은 상고시대 고대국가(archaic state)의 토지조사 및 징세원칙을 보여주는 문헌이다. 『맹자』는 일정 면적의 토지를 아홉 등분해 개인에게 균분(均分)하는 이른바 “수전지제(授田之制)”와 더불어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이른바 “취민지제(取民之制)”를 동시에 기술하고 있다.<sup>8)</sup> 『周禮』 역시 “열 명의 양민(良民)을 하나의 구(溝)로 묶는 (十夫有溝)” 향수(鄉遂)의 공법(貢法=조세징수의 방법)과 더불어 “아홉의 양민을 정전의 단위로 묶는 (九夫爲井)” 도비(都鄙)의 조법(助法=경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 이상의 경전들은 모두 토지의 소유 및 배분의 원칙과 더불어 적정세율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후대의 논의는 그런 경전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었다.

한대(漢代, BC206-AD206)의 『鹽鐵論』은 중앙 행정관료(御史大夫)와 재야의 비판지식인(賢良文學) 사이에서 벌어지는 적정세율에 관한 첨예한 논쟁을 보여준다. 중과세를 통한 국부의 축적을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 주장하는 ‘대부’를 향해 ‘문학’은 감세(減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문학’은 정전의 실현을 통한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대부는 토지의 사유화를 현실로 인정한다. ‘문학’은 국가의 개입에 의한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낮은 세율을 최선의 양민책(養民策)이라 주장한다. 반면 ‘대부’는 토지의 사유화에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국가주의 개입에 의한 증세의 입장을 고수한다. 두 입장의 차이는 단순히 “작은 정부” 이론과 “큰 정부” 이론을 넘어서는 현실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준다.<sup>10)</sup>

당대(唐代, 618-907)의 현실에서 토지의 소유와 분배정의에 관한 논쟁은 더욱 첨예하게 전개된다. 당제국은 건국 당시 균전제를 통한 토지의 균등분배를 국시로 삼았다. 8세기 중엽 균전제가 붕괴된 후 토지의 사유화가 전개되면서 이른바 토지점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sup>11)</sup> 정부는 당조(唐朝)의 성법(成法)

8) 『文獻通考』 1.5. 맹자의 원의(原義)에 대한 마단림의 해석.

9) 『周禮』 「地官·大司徒」에 따르면, 주제(周制)는 왕기(王畿) 교내(郊內)에 육향(六鄉)을 두고 교외(郊外)에 육수(六遂)를 두었다.

10) 문학이 강조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관해선 특히 『鹽鐵論』 「力耕」 1.2.27-28을 볼 것.

인 인두세를 폐기하고, 실제소유 토지의 면적에 부합하는 재산세를 부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토지사유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특화는 이른바 “중세농업혁명”이라 불리는 당송변혁기의 사회·경제적 격변을 불러왔다.<sup>12)</sup> 상업경제의 활성화는 미증유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물질적 풍요와 함께 인구의 급증을 가져왔지만, 대지주와 거상의 출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

양극화의 현실은 북송대(北宋: 960-1127)에 이르면 더욱 두드러졌다. 일본 도쿄학파의 연구에 의하면, 11세기 중엽 주호(主戶: 전농가의 2/3)의 60-90프로가 부농의 장원에 예속된 4 혹은 5호등(戶等)의 전농(佃農)이었다. 토지소유주의 다수를 차지했던 관료 신분의 대지주들은 빈곤한 전농을 고용해 대규모의 장원(莊園)을 경영했다.<sup>13)</sup> 치시아(漆俠)의 조사에 따르면, 북송 정부는 인구의 0.5-0.6프로에 불과했던 관료, 대지주 및 거상(巨商)들이 부를 독점한 현실에서 토지점병의 확산을 무대책으로 방임했다.<sup>14)</sup> 개국 초부터 송조(宋朝)는 “전제는 확립되지 않고(田制不立),” “토지점병은 억제되지 않았던(兼并不抑)” 대안부재의 상황이었다.<sup>15)</sup>

북송대엔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일군의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경력개혁(慶曆改革, 1042-1043) 당시 무관(無官)의 철학자 이구(李覲, 1009-1059)는 『주례』

11) 5세기 후반 북위가 처음 도입한 균전제는 이후 북제(550-577)와 북주(557-581)를 이어 수(581-618)와 당이 계승했다. 균전제는 국가에 의한 토지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전제의 이상과도 결부되어 있었다. 정전제와 균전제의 관계에 대해선 朴漢濟, “北魏均田制의成立과胡漢體制,” 『東洋史學研究』 24 (1986), 43-113 및 曾我部靜雄, 『均田法とその稅役制度』 (東京: 大日本雄弁會講談社, 1953)를 참조할 것.

12) 당송변혁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해선 宮崎市定, 『中國史』 (東京: 岩波書店, 1977), 周藤吉之, 『中國土地制度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4), 1장, Mark Elvin, *The Pattern of China's Pa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Part 2을 참조. 당 중엽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해선 Denis Twitchet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AD*, Part O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2-31를 볼 것.

13) Peter Golas, “Rural China in the Song,” *Journal of Asian Studies* 39.2 (1980), 300-301.

14) 漆俠, 『中國經濟通史: 宋代經濟卷』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9), 261-262.

15) 남송 (1279-1279) 왕명칭(王明淸, 1127- ?)의 표현송조의 토지정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명한 문구다. 같은 책 262를 참조할 것.

를 근거로 정전(井田)의 전면적 복원을 주장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북송대 현실에선 경병의 확대로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그는 경작되지 못한 채 버려진 땅, 즉 광토(曠土)의 재분배를 통해 자영민의 육성과 더불어 토지의 생산성까지 함께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6)</sup> 동시대의 소순(蘇洵: 1009-1006)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한전제(限田制)를 현실적 토지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의 뒤를 이어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은 국가에 의한 자영농의 육성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왕안석은 직접 정전의 복원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농민을 위한 저리용자정책 청묘법(靑苗法)과 향촌의 치안유지와 군비감축을 겨냥한 보갑법(保甲法)은 북송의 현실에서 고대(古代)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볼 수 있다.<sup>17)</sup> 대지주와 거상(巨商)을 직접 조준한 왕안석의 신법은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적극주의(state activism) 정책으로 정부세수의 확대 및 빈농·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목표로 한다. 왕안석의 신법에 비판적이었던 북송대 구법당(舊法黨)의 영수들은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대를 사회적 화합의 기초로 파악했다. 특히 사마광은 부자와 빈자의 상호의존이 자생적인 유기체적 번영의 기반이 된다는 상구상제(相救相濟)의 논리를 제시했던 것으로 유명하다.<sup>18)</sup>

신법당과 구법당의 정치투쟁은 사적소유와 분배정의에 관한 양자의 근원적인 철학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신법을 추진했던 신종의 서거 이후 7년에 걸친 구법당의 원우반정(元祐反正, 1086-1093)이 이어지지만, 철종(哲宗, 재위 1085-1100)과 휘종(徽宗, 재위, 1100-1125)이 신법을 계승하

16) 『李觀集』(北京: 中華書局, 2011), 81-82. 이구의 정치·경제 사상에 관한 최신의 분석으로는 Jaeyoon Song, *Traces of Grand Peace: Classics and State Activism in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5), Chapter 3을 참조.

17) 히가시 이치오는 왕안석이 직접 정전제의 복원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신법을 통해 정전제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東一夫, 『王安石新法の研究』(東京: 風間書房, 1970).

18) 사마광의 사회사상 관해선 Xiao-bin Ji, *Politics and Conservatism in Northern Song China: The Career and Thought of Sima Guang (A.D. 1019-086)*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05), Chapter 3; Peter Bol, "Government, Society, and State: On the Political Visions of Ssu-ma Kuang and Wang An-shih," in *Ordering the World*, 152-157.

면서 북송 최후의 30여년은 왕안석 방식의 국가주의 개혁 노선의 시대가 된다. 이후 채경(蔡京, 1047-1126)의 전권(專權)으로 정쟁이 격화되면서 신법에 반대했던 이른바 원우당인은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북송 멸망 이후, 이들은 왕안석 방식의 국가주의 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시도한다. 왕안석과 신법에 관한 비판은 남송대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갔다.<sup>19)</sup>

개국초기부터 남송대 사대부 집단은 통치의 근본이념에 관한 새로운 논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정교한 논의를 축적해 갔다.<sup>20)</sup> 그들이 전개했던 경제담론의 주요 매체는 크게 경학주석서, 역사서 및 상소문을 꼽을 수 있다. 경서 중에서는 특히 『상서』, 『주례』, 『춘추』에 관한 다수의 주석서를 통해서 경제담론을 이어갔다. 역사서 중에서는 왕안석 시대를 비판하는 당대사(當代史)가 주요한 공론의 포럼을 제공했다. 대부분의 사대부는 국정외 중대사나 주요사안에 대해서 상소문을 남겼는데, 경학적 논변과 역사의 지식은 상소문 작성의 기본이 되었다. 요컨대 그들은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헌정의제”(憲政議題, constitutional agenda)를 논의했던 것이다.<sup>21)</sup>

### 3. 남송대 전부(田賦) 논쟁의 경학적 근거

남송대 전부(田賦) 논쟁은 북송대 신법의 정치실험과 경제논쟁 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들의 전부논쟁은 일차적으로 유가경전의 주석을 통해 이뤄졌다. 특

19) 휘종 시대의 정치사에 관해선 Ari Levine, “The Reigns of Hui-tsung (1100-1126) and Ch'in-tsung (1126-1127) and the Fall of the Northern Sung,”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5, edited by Denis Twitchett and Paul J. Smith, 556-643; Patricia Ebrey, *Emperor Huizong*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를 참조할 것.

20) 남송대 주례학(周禮學)의 전개과정을 보면, 다수의 학인들이 다섯 세대에 걸쳐 “반신법(反新法)”의 정치담론을 심화시켜 갔음을 알 수 있다. Jaeyoon Song, “Tension and Balance: Changes of Constitutional Schemes in Southern Song Commentaries on the *Zhouli*.”

21) 필립 쿤은 “헌정의제”란, “공적인 생활세계의 합법적 경영(the legitimate ordering of public life)”에 직결되는 여러 문제들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the will)”라고 정의하고 있다 (Philip Kuhn, *Origins of the Modern Chinese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p.2).

히 『상서』, 『주례』 및 『춘추』 등의 경전은 그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했다. 남송대에 걸쳐 저술·출판된 『상서』, 『주례』 및 『춘추』의 주석서들은 알려진 것만 각기 백여 권을 넘는다. 이는 당시 출판되었던 『논어』 및 『맹자』 주석서의 숫자를 웃도는 분량이다.<sup>22)</sup> 송대의 경학은 한·당대의 훈고전통을 벗어나 경전의 취지를 밝히는 이른바 ‘논설지학(論說之學)’의 새 전통을 수립했다.<sup>23)</sup> 청대 고증학의 관점에서선 흔히 이단(異端)의 시대로 폄하되지만, 남송대 경학자들은 고경(古經)의 주석을 통해 현실정치의 대안을 마련하는 ‘이경치세(以經治世)’의 경세가들이었다. 그들은 경전에 제시된 고대의 이상을 현실비판의 규범적 근거로 활용했다.

### 3-1. 『상서』 「우공」편의 토지제도

전통적으로 전부(田賦)에 관한 경학사의 경제담론은 『尙書』 「禹貢」 편에서 시작된다. 일례로 마단림의 『문헌통고』는 바로 「우공」 구주(九州)에서 「전부」의 논의를 시작한다. 요(堯)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홍수를 다스린 신하 우(禹)는 전국을 구주(九州)로 나누고 오복(五服)의 행정구역을 결정한다. 구주(九州)란 당시 국가의 행정범위에 귀속된, 토양, 풍속, 문물 등 서로 다른, 아홉 개

22) 흔히 남송대 경학사를 논할 때 흔히 ‘四書’가 ‘五經’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주이존(朱彝尊, 1629-1709)의 『經義考』에 기재된 남송대 경전 주석서의 출판상황을 보면, 그러한 일반론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송대 주례학의 주석서에 관한 분석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Jaeyoon Song, “Tension and Balance: Changes of Constitutional Schemes in Southern Song (1127-1279) Commentaries on the Zhouli (2009)” 및 *Traces of Grand Peace: Classics and State Activism in Imperial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23) 『四庫全書總目提要』(海口: 海南出版社, 1999), 109.00784. 청대의 고증학자들은 송대의 경학을 “논설지학”이라 폄하했다. 송대의 경학자들은 한·당대의 문헌학적 강박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를 비교적 자유롭게 피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례』주석의 경우, 이구의 유명한 “주례치태평지서”는 주제별로 분류된 50 여 편의 논설 묶음이다. 남송대 섭시(葉時, 1184년 진사)의 『예경회원』은 『주례』에서 도출한 통치에 관한 100개의 주제들에 관해 정교한 정치철학적 논변을 전개하고 있다. 상세한 논의는 Jaeyoon Song, *Traces of Grand Peace: Classics and State Activism in Imperial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5), 3장과 14장을 볼 것.

의 지역을 가리킨다. 오복은 왕기에서 사방 오 백리마다 경계를 그어 놓은 정방형의 인위적 행정구역이다. 「우공」편에 제시된 각 지역 토양의 성격, 토지의 생산성 및 전세(田稅)의 등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우공(禹貢) 구주(九州)의 지형 및 농업생산의 기록

| 지명     | 토양                      | 밭(田)의 등급 | 부세(賻稅)        | 공물(貢物)             |
|--------|-------------------------|----------|---------------|--------------------|
| 기주(冀州) | 희고 부드러운 흙 (白壤)          | 5등급(中中)  | 1·2등급(上上錯)    | 피복(皮服)             |
| 연주(兗州) | 검고 기름짐 (黑墳)             | 6등급(中下)  | 9등급(貞)        | 칠(漆)·명주실           |
| 청주(靑州) | 희고 기름짐 (白墳)             | 3등급(上下)  | 4등급(中上)       | 소금·참배·해물           |
| 서주(徐州) | 붉고 질척함 (赤墳)             | 2등급(上中)  | 5등급(中中)       | 비단                 |
| 양주(揚州) | 대부분 진흙 (塗泥)             | 9등급(下下)  | 6·7등급(下上·上錯)  | 풀옷(卉服)             |
| 형주(荊州) | 대부분 진흙 (塗泥)             | 8등급(下中)  | 3등급(上下)       | 새깃·소꼬리털·상아·가죽      |
| 예주(豫州) | 부드러운. 밀흙. 검고 기름짐 (壤·墳墟) | 4등급(中上)  | 1·2등급(錯上中)    | 칠·모시·칠배·면사·숫돌      |
| 양주(梁州) | 검푸르다 (靑黎)               | 7등급(下上)  | 7·8·9등급(下中三錯) | 황금·철·은·강철 및 여러 짐승들 |
| 옹주(雍州) | 누렇고 부드러운 흙 (黃壤)         | 1등급(上上)  | 6등급(中下)       | 구슬·옥돌              |

『상서』의 기록에 따르면 치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전설의 우(禹)는 구주 전역을 돌며 토지를 조사했다. 물론 전설시대 고대국가에 관한 후대의 기록인 만큼 「우공」의 기록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자체로선 토지조사의 기초적 정보에 불과하지만, 후대의 경학자들은 여기서 조세의 기본 원칙을 유출해냈다.

위의 표를 자세히 보면, 밭의 등급과 전세의 등급이 상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주와 예주의 토지는 각각 5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되지만, 두 주 모두 부세는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옹주의 경우 토지의 등급은 최상인데, 전세는 6등급에 머문다. 상식적으로 「우공」의 조세법에는 일관된 원칙이 없어 보인다. 당대의 공영달(孔穎達, 574-648)은 “밭의 등급은 낮는데 전세가 높은 경우 사람들의 공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며, 밭의 등급은 높는데 전세가 낮은

것은 사람들의 공력이 적게 든 것”이라 해석한다.<sup>24)</sup> 그의 해석대로라면, 상고 시대 성인(聖人)이 지역적 차별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정례화(定例化)했다. 상식적으로 공영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우공』구주의 부세 기준은 경학 상의 작은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남송대의 저명한 경학자 임지기(林之寄, 1112-1176)는 주석서 『尙書全解』에서 바로 이 문제에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적고 있다.<sup>25)</sup>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삼대가 각기 달랐으나 모두 십분의 일을 넘지 않았다. 십분의 일을 넘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 또 아홉 등급의 차이를 둔 것은 구주의 토지 면적과 인구의 총수가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부세 수입의 총수 역시도 달랐기에 밭 등급만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부세 수입의 총수를 집계한 후, 그 다과(多寡)를 비교해서 아홉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기주(冀州)의 부세는 구주 중에서 가장 많았기에 제1등급(上上)이 되었다. 연주(兗州)의 부세 수입은 구주 중에서 가장 적었으므로 제9등급(下下)이 되었다. 그 밖의 일곱 주 역시도 그러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때 이미 그런 9등급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sup>26)</sup>

임지기의 해석을 따르면 「우공」 구주의 부세 원칙이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 위의 표에 보이는 부세의 9등급은 생산총액에 따른 세액의 다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세 등급은 토지의 비옥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총생산량에 따른 것이다. 상식적으로 각 주의 생산량은 토지의 면적과 인

24) 『文獻通考』 1.1.1, “田下而賦上者, 人功修也. 田上而賦下者, 人功少也.”

25) 임지기는 남송대 초기 왕안석의 『삼경신의』를 비판하면서 『주례』와 『상서』에 관한 새로운 주석서를 집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尙書全解』는 당시 많은 유생들의 필독서였다. 절강 금화(金華)의 거유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은 그의 대표적 제자로 꼽힌다 (Jaeyoon Song, *Traces of Grand Peace*, 327-38).

26) 林之寄, 『尙書全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1.1.1-2, “三代取於民之法不同, 而皆不出什一之數. 既不出什一之數, 而乃有九等之差者, 蓋九州地有廣狹. 民有多寡. 其賦稅所入之總數自有不同, 不可以田之高而準之. 計其所入之總數, 而多寡比較, 有此九等. 冀州之賦比九州爲最多, 故爲上上. 兗州之賦比九州最爲少, 故爲下下. 其餘七州皆然. 非取於民之時有此九等之輕重也.”

구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부세의 9등급은 각 주 총생산량의 집계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적용한 세액의 다과를 반영한 것이다. 「우공」편의 주석을 통해서 임지기는 최소한 네 가지의 일반적 원칙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1. **투명과세의 원칙:** 정부의 조세부과는 정확한 토지조사에 기초해야 한다.
2. **균등과세의 원칙:** 정부의 징세는 토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소출량에 비례해야 한다.
3. **낮은 세율의 원칙:** 조세정의는 낮은 세율(10프로 이하)을 기본으로 한다.
4. **토지공유의 원칙:** 정부에 의한 토지배분은 징세의 기본전제다.

『상서』 「우공」편에서 도출된 이 네 언명은 “경”(經: 경전)에 대한 “전”(傳: 주석)의 형식을 통해 조세정의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승격되었다 할 수 있다. 이 네 원칙 중에서 우선 ‘낮은 세율’의 경학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자.

### 3-2. ‘낮은 세율’의 경학적 근거: 십일지세(什一之稅)의 이상

유가경전은 이른바 십일지세(什一之稅)를 조세정의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십일지세는 국가가 백성에게 일정한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 생산량의 10프로 이하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유가경전 중에서도 특히 『상서』, 『맹자』 및 『주례』 등의 문헌은 구체적으로 삼대(三代)의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다.<sup>27)</sup> 그러한 전거 위에서 후대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증과세를 비판하는 경전의 근거로 상고의 십일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십일지세의 이상을 살리려는 그들의 노력은 경전의 주석을 통해 꾸준히 이어졌다.<sup>28)</sup>

주희(朱熹: 11130-1200)는 『孟子章句集注』 「滕文公」장에서 삼대의 십일지세

27) 『尙書』에 제시된 십일지세에 관한 주석으로 『尙書正義』(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禹貢」, 161-61를, 『맹자』에 관해선 아래 주27를 참조할 것.

28) 『經義考』에 의하면, 남송대 출판되고 유통되었던 『상서』, 『주례』, 『춘추』 등에 대한 주석서는 수백 종을 넘는다. 특히 남송대의 『주례』 주석서에 관해선 Jaeyoon Song, *Traces of Grand Peace: Classics and State Activism in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n Center, 2015), Chapter 14를 참조할 것.

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맹자원문: 하대에는 50무의 땅을 나눠주고 공(貢)을 요구했고, 은대에는 70무의 땅을 주고 조(助)를 요구했으며, 주대에는 100무의 땅을 주고 철(徹)을 요구했다. 이는 모두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sup>29)</sup>

주자집주: 하나라 때 성인남자는 각각 50무의 땅을 받고 일인당 5무의 수입을 공물로 바쳤다. 상나라 사람들은 정전제를 처음 실시했는데, 630무의 땅을 70무의 아홉 개 구(區)로 나누었고, 가운데를 공전(公田)으로 삼았다. 그 밖의 여덟 가호에 각각 한 구씩 맡았고, 공전의 경작에 조력했기에 따로 사전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았다.

주나라 당시에는 성인남자 한 명당 100무의 땅을 받았다. 향수(鄉遂)는 공법을 사용해 열 명의 남자를 구(溝)로 묶었다. 도비(都鄙)는 조법을 사용했으니 여덟 가구가 같은 정(井)에 들어갔다. 경작을 할 때는 힘을 모아서 일하고, 세금을 거둘 때는 토지의 면적(무수)를 따져서 나눴으니, 이를 일컬어 철(徹)이라 한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십분의 일이었다.

정수의 방법(=공법貢法)은 10분의 1을 상수(常數)로 삼았고, 경작의 방법(=조법助法)은 9분이 1이었으나 상나라의 제도는 고증할 수 없다. 주나라의 제도는, 공전 100무 중 20무는 움막집이고, 한 명당 경작하는 공전의 면적은 실제로 10무 정도이니 100무의 사전(私田)과 합해서 11등분 한 후 그 중 하나를 취하면, 10분의 1보다도 더 가벼웠다(역주: 대략 9.09%). 상나라 제도를 헤아려 보면, 마땅히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14무가 움막집이었으니 한 명당 경작하는 공전은 7무였으니 이 역시 십분의 일이었다.<sup>30)</sup>

29) 『孟子注疏』(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藤文公」 5上, 160: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30) 『四書章句集注』 「藤文公」 5上, 254: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其實皆什一也. 朱熹集注: 夏時一夫受田五十畝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以六百三十畝之地畫爲九區, 區七十畝,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以助耕公田而不復稅其私田. 周時一夫授田百畝, 鄉遂用貢法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謂之徹. 其實皆什一也. 貢法固以十分之一爲常數. 惟助法乃是九一, 而商制不可考. 周制則公田百畝中以二十畝爲廬舍, 一夫所耕公田, 實計十畝. 通私田百畝爲十一, 分取其一. 蓋又輕於什一矣. 竊料商制, 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什一也.”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희는 『상서』 및 『주례』와 그에 대한 한·당대 경학주석서를 전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흥기한 남송대의 경학주석서들, 특히 『주례』에 관련된 여러 저작들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그는 명시적으로 하·은·주 삼대의 적정세율이 모두 토지 소출량의 10%를 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주희와 마찬가지로 섭적 또한 십일지세를 적정세율의 원칙으로 칭송한다.<sup>32)</sup> 그러나 낮은 세율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아래 상세히 논구되겠지만, 섭적은 10%의 세율을 이상화하면서 정부의 불간섭과 경제적 자유방임의 논리를 전개한다. 반면 주희는 토지겸병의 억제와 빈농구제의 방법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경계법(經界法)의 실시를 요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고대 경학적 세계관에서 낮은 세율의 원칙은 토지공유의 원칙과 결합되어 있었다. 정부가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발적 납세자의 저변확대가 필수적이며, 역설적이지만 자영농의 육성을 위해선 국가개입에 의한 토지의 균등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普天之下 莫非王土”란 『詩經』「小雅」의 구절이 웅변하듯 고대의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유화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경전에 제시된 토지 국유화의 이상은 그러나 국왕에 의한 토지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의 재분배를 지향한다. 그러한 “토지 공개념”과 균등분배의 이상은 정전제(井田制)로 제도화되었다.

주희와 섭적은 과연 정전제의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했는가? 주희는 삼대(三代)의 이상통치에서 10% 낮은 세율이 실현될 수 있었던 근거로 정전제의 실시에 착목했다. 반면 섭적은 정전제는 후대의 현실에서는 복원 불가능한 상고의 토지제도일 뿐이라 생각했다. 정전제에 대한 두 사람의 상이한 해석은 소유와 분배에 관한 양자의 철학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정전제에 관한 주희의 견해를 살펴보자.

31) 남송대 전국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다종의 『주례』주석서를 남겼다. 특히 진부량을 위시한 절강 온주의 영가 지방 학자들은 『주례』주석을 통해서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Jaeyoon Song, “Tension and Balance: Changes of Constitutional Schemes in Southern Song Commentaries on the *Rituals of Zhou*” in Benjamin Elman and Martin Kern, edited, *Classical Learning and Statecraft* (Brill, 2010), 252-276를 참조할 것.

32) 周夢江, 『葉適與永嘉學派』(浙江古籍出版社, 1992), 188-90.

## 3-3. 정전제의 경전적 기초: 토지분배의 이상

상고시대 정전제의 도입 및 실시 여부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거리다. 실제로 시행되었던 토지제도도 보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 토지균분의 이상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sup>33)</sup> 역사적 실재여부와 별도로 후대의 정치사상가들 정전제의 이상을 선양하고, 그 고대적 이상에 근거해 토지개혁의 플랜을 제시했다. 정전제는 안정된 세수의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자영농을 육성하는 토지재분배의 고대적 원형이었다.

고대의 정전제에 관해선 『孟子』 「藤文公」과 『周禮』 「地官」에 가장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 두 경전의 기록은 역사적 신빙성을 갖지는 못하지만<sup>34)</sup>, 주희를 포함한 대다수 남송대 사상가들은 『주례』가 서주시대 주공(周公)의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믿음 위에서 남송대의 사상가들은 『주례』를 전거삼아 토지개혁의 청사진을 도출했다.<sup>35)</sup> 대부분의 경학 주석서에서 정전제는 가장 이상적인 고대의 토지제도로서 칭송

33) 대부분의 구미 학자들은 고대 중국에서 정전제가 실시되었음을 부인한다. 맹자와 같은 정치사상가들이 상상해낸 유토피아적 이상이라 말한다. (Lothar von Faulkenhausen, *Chinese Society in the Age of Confucius (1000-250 BC): The Archaeological Evidence*, Los Angeles: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UCLA, 2006). 반면 중국 및 대만의 학자들은 정전제가 역사적으로 실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문헌에 산일된 전거를 취합해 정전제와 유사한 토지공유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및 대만의 연구에 대해선 徐喜辰, 『井田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金景芳, 『論井田制度』 (濟南: 鄒魯書舍, 1982); 趙岡/陳鐘毅, 『中國土地制度史』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2)를 참조.

34) 『맹자』의 기록은 전국시대의 전설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주례』를 전국시대의 위서로 보는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주례』 역시 주대에 가탁한 이상적 논의일 뿐이다.

35) 북송대 왕안석은 그의 『주관신의』를 통해 국가주의 개혁의 청사진을 제공했다. 왕안석의 경학에 반발한 남송대 경학자들은 『주례』의 기본적 전제를 재해석했다. 그 결과 남송대 전반에 걸쳐 다섯 세대의 학자들이 1백 권이 넘는 주례 주석서를 남겼다. 왕안석과 주례에 관해선, Peter Bol, “Wang Anshi and the Zhouli,” in *Statecraft and Classical Learning: the Rituals of Zhou in East Asian History* (Leiden, Boston: Brill, 2010)를 참조할 것. 남송대 주례학의 흥기에 관해선 Jaeyoon Song, “Changes of Constitutional Schemes in Southern Song Commentaries on the Zhouli,” 2010을 볼 것.

되고 있다. 『상서』, 『주례』, 『맹자』, 『예기』 등에 관한 다수의 남송대 주석서에는 정전제에 관한 다양한 논변이 개진(開陳)되어 있다. 남송대 경학자들 중에는 경전에 대한 존숭과 고대의 제도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 정전제의 복원을 부르짖었던 이른바 직해주의자(直解主義者, literalist)들이 상당수 보인다.<sup>36)</sup> 그러나 우리는 정전제를 칭송했던 경학자들이 모두 토지재분배를 주장한 과격한 복고주의자들이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전에 대한 주석자의 견해와 현실정치의 정책제안 사이의 괴리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주희의 경우, 『맹자』, 『주례』 및 역사서의 기록에 기초해서 정전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또 대화록과 잡저에서도 스스로의 견해를 피력했다. 토지배분과 농지정비에 대한 주희의 견해는 “농지의 구획은 어진 정치(仁政)의 시작”이라는 『맹자』 「등문공」에 기재된 맹자의 선언에 대한 그의 주석에 잘 드러나 있다.<sup>37)</sup> 이른바 “경계(經界)” (농지구획)의 혼란은 정지(井地)의 교착(交錯)을 초래하며, 정전제의 붕괴는 호강(豪強)의 토지점병과 탐폭(貪暴)의 이윤독점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곡록(穀祿)의 불평등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한다. 원칙적으로 주희는 경전에 제시된 정전제의 이상을 칭송하면서 지속적인 토지점병의 결과로 양극화의 덫에 빠진 후대의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적 위기를 개탄한다.<sup>38)</sup>

주희는 삼대(三代)의 이상통치를 찬양했지만, 남송의 현실에서 정전제의 복원을 주장하는 과격한 복고주의(復古主義)에 매몰되진 않았다. “井田類說”에서 그는 남송대의 현실에서 정전제의 복원은 이미 불가능해졌으며, 토지의 재분배를 위해 국가가 무리하게 경제에 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sup>39)</sup> 또한 정전제의 복원을 위해선 농지의 압류와 재분배가 불가피하므로 황무지는 광활하고 인구가 희소했던 전한(前漢) 초기나 후한(後漢)의 중흥기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주장이다.<sup>40)</sup> 또한 그는 맹자의 왕도를

36) 예컨대 신화적 해석으로 유가경전에서 상고시대의 정치제도를 이념적으로 재구성한 나뭇(羅泌, 연도미상)은 그의 역작 『路史』에서 정전제의 복원을 주장한다. 남송대 『주례』 주석서로 이른바 “논설지학(論說之學)”의 대표작이었던 십시(葉時)의 『예경회원』 역시 정전제를 선정의 기본제도로 강조하고 있다.

37) 『四書章句集注』, 『孟子』 5.325-26.

38) 『朱子語類』, 98.2530-31.

39) 『朱熹集』(四川教育出版社, 1996), 68-9.3596.

논하면서 철저한 토지조사에 근거한 공정한 징세와 투명한 재정지출만이 정전제의 이상에 수렴해가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역설하고 있다.<sup>41)</sup> 요컨대 그는 남송의 현실에선 부민과의 타협 속에서 점진적 개선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정전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마단림의 분석에 따르면, 주희는 『주례』에 제시된 정전제에 관해서 절강성 온주지방의 이른바 영가학파(永嘉學派)의 제현들과 상충되는 견해를 보였다. 주희는 정현(鄭玄: 127-200)의 주석에 근거해서 주대의 정전제가 왕의 직할지인 왕기(王畿)의 도비(都鄙)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sup>42)</sup> 반면 영가학파는 일반적으로 서주 시대 정전제가 왕기와 제후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했다.<sup>43)</sup> 주희는 “열 명을 일구로(十夫有溝)”와 “백 명을 일혁으로(百夫有洫)” 조직한다는 『주례』 「地官·遂人」의 구절이 제후국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여덟 명을 일정(一井)으로 묶는 정전제는 왕기에서만 실시되었고, 그 밖의 제후국들에서는 정전제 대신 열 명을 일구(一溝)로 다른 유형의 향촌조직이 실시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면 영가학파는 “구(溝)”와 “혁(洫)”이 향촌조직의 단위가 아니라 농경공동체를 경계를 나누는 수로(水路)이므로 정전제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파악했다.<sup>44)</sup> 진부량은 왕기 내의 도비와 향수가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한 이유를 지리적 차이에서 찾았는데, 도비는 산과 숲을 끼고 있는 지형인 반면, 육군을 배양했던 향수(鄉遂)는 “평원광야”(平原廣野)라 해석한다.<sup>45)</sup>

요컨대 주희는 서주(西周; 대략 기원전 11세기-771년) 시대 정전제가 국왕

40) 같은 책; 孟淑慧, 『朱熹及其門人的教化理念與實踐』, 174-176.

41) 『朱熹集』(四川教育出版社, 1996), 25-4. 1056. 42세 되던 해 장식(張栻, 1133-1181)에게 보낸 서신 내용.

42) 도비(都鄙)란 왕의 친족과 공신들에게 분봉(分封)된 왕기 내의 영지(領地)를 의미한다.

43) 절강성 온주(溫州) 영가(永嘉) 출신의 주례학자(周禮學者) 진급지(陳及之, 대략 12세기)는 정전제가 왕기와 제후국들을 모두 포함한 이른바 천하의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영가학파의 대가 진부량 역시 그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44) 『문헌통고』, 1.4-5.

45) 같은 책, 1.5.

의 직할지인 왕기에서만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토지분배의 고대적 한계를 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가학과의 제현들은 정전제가 서주 구기(九畿)의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전제의 복원을 주장했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영가의 사상가들은 구기(九畿) 전역에 걸쳐 정전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서주의 현실과 남송대의 사회조건이 근원적으로 다름을 강조하고, 그런 근원적 차이 때문에 정전제는 복원 불가능함을 주장했다. 아래 논의될 섭적은 영가학과의 이러한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이상적 토지제도로서 정전제는 남송대 사상가들에게 토지공유의 원칙, 낮은 세율의 원칙, 투명과세 및 균등과세의 원칙을 보여주는 이념적 준거였다. 경전의 주석서를 통해 정전제를 칭송했던 사상가들이 반드시 정전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정전제의 이상에 입각해서 남송대의 사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진한대 이후의 토지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들은 진한대 이후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정치적 의제를 형성해갔다.

#### 4. 후대사(後代史) 인식: 균전제·양세법에 관한 주희의 견해

남북조시대 북위의 선비(鮮卑)족이 고안한 균전제(均田制)는 당대로 이어졌다.<sup>46)</sup> 선비족이 도입한 제도였음에도 토지의 국유화 및 재분배에 입각한 자영농 육성의 이념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균전제는 흔히 고대의 정전제에 비견되곤 했다.<sup>47)</sup> 역사적 관점에서 균전제는 안정된 조세충당을 위해 정부가 대지주로서 다수 농민을 전호(佃戶)로 고용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대 이래 많은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균전제가 부의 편중을 막고 빈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라 칭송했다.<sup>48)</sup>

46) 각주 10번 참조.

47) 특히 남송대 정초(鄭樵, 1104-1162)는 균전제를 후대의 정전제라 파악했다(『文獻通考』, 2.41.). 일본학자 소가베 시즈오는 정전제와 균전제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논한다(曾我部靜雄, 『中國律令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71], 155-62).

당 중엽 안록산의 난(755-763) 이후 재정적으로 위축된 당 정부는 양염(楊炎)의 양세법(兩稅法)을 채택함으로써 실제로 토지의 사유화를 법제화했다. 양염은 균전제에 결부되어 있었던 인정(人丁) 위주의 조·용·조(租·庸·調) 제도를 폐지하고, 전격적으로 실소유의 토지면적에 비례하는 이른바 종전과세(從田課稅)의 원칙을 도입했다. 토지재산에 비례하는 재산세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다. 양세법은 징세절차의 간소화 및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에 입각한 재정합리화를 지향했다.<sup>49)</sup> 양세론의 도입은 이후 토지문제를 둘러싼 경제담론에서 최대의 논쟁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대다수 한·당대 경학자들은 진(秦: 기원전 221-206)의 출현을 성왕통치의 이념이 전면적으로 파괴된 역사의 최저점으로 파악했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정전제의 붕괴는 곧 민생(民生)의 파괴이자 선정(善政)의 폐기였다. 중국사에서 흔히 진대 법가 개혁가들에 의한 천택제의 도입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공인한 시발점이라 평가된다. 반면 진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대부분의 전근대 지식인들은 법가에 의한 천택제(阡陌制)의 도입으로 정전제로 대표되는 고대적 토지공유의 이상이 해체되었다고 생각했다. 진제국을 극단적으로 폄하했던 비판적 사상가들은 천택제의 도입과 더불어 자영농이 몰락하고 토지점병이 심화되는 등 역사의 퇴보가 시작되었다고 인식했다. 남송대 도학자들은 대부분 그러한 퇴행적(regressive) 역사관을 견지했다.

호상학과(湖湘學派)의 거두 호굉(胡宏, 1102-1161)은 “균전이 위정의 급선무”이며 “정전(井田)은 성인(聖人)이 균전(을 실행했던) 요법(要法)”이라 칭송했다.<sup>50)</sup> 호인(胡寅, 1098-1156)은 정전제가 “인구별 토지배분(計口授田)”의 이상을 구현한 제도이며<sup>51)</sup>, 균전제와 결부된 조·용·조(租庸調)는 북위 이래 최고의 양법이라 평가한다.<sup>52)</sup> 비슷한 관점에서 주희는 균전제가 토지 사유화의 급증으로 부의 편중을 낳고 정부의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없었음을 개탄했으며,

48) 패트리샤 이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서울: 시공사, 2008), 102. 특히 남송대 도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선 다음 쪽 셋째 문단을 볼 것.

49) 李錦綉, 『唐代財政史稿』下(北京大學出版社, 2001), 609-630; 段章甫, 『土地稅』(臺北: 五南圖書出版, 2005), 231-33;

50) 胡宏, 『知言』(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3.2a.

51) 胡寅, 『斐然集』(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21.8-11.

52) 『文獻通考』, 2.46-47.

토지생산성의 최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양염의 양세법 역시 자영민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미봉책일 뿐이라 여겼다.<sup>53)</sup> 그는 양세법의 도입으로 “천고의 성현이 전수한 정미한 의도가 이에 단절되었다!”며 탄식한다.<sup>54)</sup> 여조점은 더 나아가 양염이 천고의 죄인이라고까지 선언한다.<sup>55)</sup> 이들은 공통적으로 토지의 공적 소유, 토지의 균등배분, 자급영농의 육성, 향촌중심의 소규모 자급경제 등을 도덕공동체 실현의 기본조건으로 여겼다. 반면 부의 편중, 자영농의 붕괴, 부민의 횡포와 빈민의 예속화를 낳은 토지의 사유화 및 상업경제의 활성화에 비판적 견해를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당초 균전제의 시행은 토지 분배의 고대적 이상을 재현하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인식되었다. 토지의 사유화에 대한 성리학적 반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남송대 도학자들의 경제관은 크게 유학적 중농주의(Confucian physiocracy)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희는 “開阡陌辯”을 통해 진·한 이래 전제개혁과 전부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천맥은 농지와 농지를 나누는 두렁길 경계선을 의미한다. 천은 수직의, 맥은 수평의 통로를 의미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법가의 토지개혁으로 농지의 경계선이 바둑판처럼 균등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에서 천맥은 진(秦)나라의 제도로, 정전은 삼대의 제도로 인식되었다.<sup>56)</sup> 예컨대 『漢書』「食貨志」에는 진효공이 상앙을 시켜 정전제를 폐기하고 천맥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sup>57)</sup>

이러한 일반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희는 『周禮』「考工記」에 제시된 농지조직법을 근거로 천맥제가 정전제와 공존했던 상고의 제도라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周禮』에 따르면, 수(遂, 넓이 2척), 구(溝, 4척), 혁(洫, 8척), 회(澮, 2훈) 등 서로 다른 넓이의 붓도랑이 농지를 가르는 수로 경계선이 되는데, 주희는 이것이 정전제를 기본골격이라 보았다. 그런 근거에서 그는 천맥

53) 같은 책, 1.14.

54) 『文獻通考』, 1.14: “此其爲計, 正與楊炎疾浮戶之弊, 而遂破租庸以爲兩稅, 蓋一時之害雖除, 而千古聖賢傳授精微之意於此盡矣。”

55) 같은 책, 3.64: “楊炎所以爲千古之罪人.”

56) 같은 책, 1.13-14.

57) 『漢書』, 24上.1126.

제가 진나라 제도가 아니라 고대 정전법에 결부된 농지조직법이라 여겼다. 주희는 수로정비를 통해 경작지를 증대하는 고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선왕은 습지 근처의 농경지를 잃는 게 아쉬워 전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를 둘러싼 송사를 종식했으며, 물을 관리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했다.”<sup>58)</sup> 주희는 천택제를 정전제의 기초적 인프라, 즉 필수조건이라 생각했다. 같은 관점에서 주희는 상양의 천택제가 인력의 확보와 생산력 제고에 실패한 근시안적 미봉책이라 비판한다.<sup>59)</sup>

천택제의 고대적 기원을 밝힘으로써 주희는 당시 남송대 현실에서 새롭게 논의되던 경계법(經界法)을 정당화하려 했다. “무릇 인정은 (토지의) 경계에서 시작된다!”란 맹자의 선언에 잘 드러나듯 토지의 구획은 농업사회 경제 질서의 기본이었다. 상식적으로 농지의 경계가 어그러지면,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없다. 주희는 토지의 재분배 및 관리·유지를 위해선 정부주도의 토지정비 사업이 필수불가피하다 판단했다. 무엇보다 그는 경계법의 이상을 남송의 농촌현실에 맞게 구현하려 했다.

남송초기 임훈(林勛)은 1129년 “本政書” 13편을 통해 고대 정전제의 이상을 남송의 농촌현실에서 되살리는 구체적인 토지정비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16명의 장정을 1정(井)으로 묶고, 사방백리의 땅을 삼천사백 정으로 조직하는 토지재편성 계획으로 당대(唐代)의 7배에 달하는 전부(田賦)를 낮춰 십일지세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sup>60)</sup> 이어서 공부시랑(工部侍郎) 이탁(李擢, 1100, 진사: 1130년대 활약)은 유민(流民)을 유도해 토지를 개간하고, 금군(金軍)에 끌려간 군민(郡民)의 기전(棄田)을 회복시키고, 경작이 불가능한 지대를 정부의 토지대장에서 삭제하고, 과도한 세금은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61)</sup> 1142년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郎) 이춘년(李椿年, 1118년 진사)은 경계법의 입안을 추진하면서 토지분쟁, 세금탈루, 문서조작, 하급관리의 부정비리 등 경계(經界)의 혼란이 야기하는 열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sup>62)</sup> 아울러

58) 『文獻通考』, 1.14: “此其水陸占地不得爲田者頗多, 先王之意, 非不惜而虛棄之也, 所以正經界, 止侵爭, 時蓄洩, 備水旱, 爲永久之計, 有不得不然者, 其意深矣。”

59) 같은 책, 1.14: “商君以其急刻之心, 行苟且之政, 但見田爲阡陌所束, 而耕者限於百畝, 則病其人力之不盡; 但見阡陌之占地太廣, 而不得爲田者多, 則病其地利之有遺。”

60) 『宋史』 402「列傳」181 “林勛傳.”

61) 마단립은 이를 경계법의 초보적 단계로 파악했다 (『文獻通考』, 5.117-118).

그는 공사(公私) 영역의 구분, 공평한 과세, 허위보고의 배제, 세리(稅吏)의 부정 방지, 부패근절, 송사(訟事)의 최소화 등, 경계법의 시행으로 얻게 될 열 가지의 이점을 열거했다.<sup>63)</sup> 주희는 임훈과 이춘녕의 토지개혁안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들의 선례에 입각해 자신의 토지개혁계획을 수립했다.<sup>64)</sup>

1190년 복건성 장주(漳州)의 지부로 부임한 주희는 그 지역 토지세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경계법을 시행했다. 1140년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었던 경계법의 정책적 실효성을 재확인하면서 주희는 광종(光宗, 재위 1189-1194)에게 경계법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경계법에 관한 주희의 수정안은 정밀한 토지조사, 합리적 장부의 정리 및 장부에서 누락된 비과세 토지의 재등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sup>65)</sup> 이춘녕이 처음 입안하고 주희가 재도입한 경계법은 정밀한 토지조사, 지적도(地籍圖)의 갱신 및 토지대장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국가주도의 토지개혁을 지향했다. 요컨대 주희의 경계법은 부민(富民) 횡포의 차단, 관료부패의 일소, 조세 형평성의 확보 및 토지 생산성의 제고와 빈민의 구제를 지향했던 토지세 합리화의 기초적 노력이었다.

상양의 천택제와 양염의 양세법에 대한 주희의 비판적 입장과 결부시켜 보면, 그는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주도의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듯하다. 주희는 기본적으로 경작지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사적영역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토지점병과 불법점유(冒占)는 판적(版籍)의 혼돈과 전세의 불균등을 야기했고, 그 결과 불평등의 심화 및 조세정의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땅이 없는 빈민이 세금을 내고, 땅을 가진 부민은 조세를 회피하는” 현실적 부조리가 생겨난 것이다. 주희는 모두 경계가 부정할 결과라 판단했다.<sup>66)</sup>

주희는 백성의 직업적 안정성(民有常產), 직능의 분화(各有定業), 토지매매의 금지 및 황무지 개간의 장려를 통한 자영 농민계층의 육성이 농촌경제의 기초라 생각했다.<sup>67)</sup> 그는 “井田數說”에서 고대의 정전제(井田制)를 모방해

62) 같은 책, 5.118.

63) 王德毅, 『宋史研究集』 7, “李椿年與南宋土地經界,” 465-446.

64) 徐公喜·王衛紅, “朱熹土地所有權思想,” 『朱子學刊』 9 (1998.1), 146-47.

65) 『朱熹集』, 21.16.873-874; 『文獻通考』, 5.126-127; 王德毅, 앞의 책, 7.468.

66) 徐公喜·王衛紅, “朱熹土地所有權思想,” 『朱子學刊』 9 (1998.1), 145-46.

67) 같은 책, 147-48.

“호구의 숫자에 따른 토지 점유의 원칙” 아래 “일부가 100무의 전지(田地)을 접하는” 이른바 수전지제(授田之制)의 재도입을 경계법 시행의 기본전제로 주장하고 있다.<sup>68)</sup>

주희는 그러나 당초의 균전제와 같은 토지의 국유화 및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의 균등재분배 등의 과격적 주장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관료와 공신들에게 할양되었던 공전(公田)의 경우, 법적 재정비를 통해 침탈, 매매 및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엄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그는 지주 및 농민계층의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상당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사, 세습, 혼인, 매매, 증여 등의 형식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 대여, 매매, 교환 등을 일정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sup>69)</sup>

주희가 토지의 제한적으로나마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도학의 경세담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표면적으로 정전제는 토지의 국유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결국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자영농민층 육성책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는 정전제의 이상에 따라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사용 및 처분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소유권은 백성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면 과격한 복고주의자의 수사(修辭)를 차용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주희는 적어도 토지의 소유와 분배의 문제에 관해선 온건한 “중도좌파”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 5. 역사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모색: 섭적의 논리

남송의 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전제의 폐기, 천맥제의 도입 및 당대 균전제의 붕괴를 역사의 몰락이라 여기고 양염의 세제개혁을 비판했다. 반면 영가학파의 섭적과 『문헌통고』의 저자 마단림은 도학자들의 퇴행적 도덕사관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정전제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토지의

<sup>68)</sup> 徐公喜·王衛紅은 주희가 정전제의 원칙대로 경계법을 관철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책, 149.

<sup>69)</sup> 같은 책, 152-58.

사유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통치의 방법을 강구했다. 섭적과 마단림의 정치사상은 이른바 당송변혁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새로운 역사의식을 보여준다. 상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성장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그들의 역사의식은 거시적으로 당 중엽 양세법이 도입되던 시기를 전후해 일어난 비판사조에 맥이 닿는다.

하·은·주 삼대를 과거의 유평피아로, 진(秦) 제국 이후의 역사를 몰락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성리학적 도덕사관은 『상서』, 『시경』, 『춘추』 등 유가경학의 세계관에 뿌리내리고 있다. 당 중엽 유종원(柳宗元, 773-819)은 유명한 “봉건론(封建論)”에서 한당대 경학자들의 역사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제국의 출현을 역사의 필연이라 주장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소집단, 씨족공동체, 부족공동체, 도시국가, 영토국가를 거쳐 제국의 형성으로 나아간 지속적 통합과 집권화의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의 관점에선 소국과민의 고대적 이상이 그려진 경학적 역사관은 인류역사의 전 과정을 뒤집어 거꾸로 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권력이 약했던 상고시대엔 다수의 제후국이 난립하며 항시적 전쟁상태에 놓여 있었다. 고의 분봉제(分封制)는 성현의 이상이 구현된 유평피아가 아니라 부족국가에서 도시국가를 지나 영토국가로 나아가는 제국 형성의 중간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전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권력집권화가 미발달한 시점에서 한 시적으로 도입된 낮은 단계의 토제제도일 뿐이었다.<sup>70)</sup>

『통전』의 저자 두우(杜佑) 역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상앙의 천맥제를 칭송했다. 두우는 상앙이 정전을 폐지하고 천맥제를 실시한 결과 토지개간의 확장 과 토지사유화가 진행되었으며, 토지면적의 확장에 따른 생산력의 향상이 부국강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sup>71)</sup> 유종원과 두우의 역사관은 전통적인 한·

70) Jaeyoon Song, “Redefining Good Government: Shift Paradigms in Song Dynasty (960-1279) Discourse on *Fengjian*,” in *T'oung Pao* 97 (2011), 301-305; 송재윤, “제국적 통합과 집권화의 이념: 유종원 봉건론의 정치철학적 함의,” 『동양철학』 35(2011), 33-59.

71) 『通典』(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1.3-7. 『文獻通考』, 1.13: “秦孝公用商鞅。鞅以三晉地狹人貧; 秦地廣人寡, 故草不盡墾, 地利不盡出。於是誘三晉之人, 利其田宅, 復三代無知兵事, 而務本於內; 而使秦人應敵於外。故廢井田, 制阡陌, 任其所耕, 不限多少, 數年之間, 國富兵強, 天下無敵。”

당 경학자들의 세계관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담고 있으며, 양세법의 도입 이후 전개된 토지 사유화의 경향을 역사적 필연으로 여겨 긍정하고 있다. 유종원과 두우의 새로운 역사의식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분배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특히 유종원 『봉건론』은 중앙집권화를 지향했던 북송대의 현실에서 널리 읽히고 각광 받았다.<sup>72)</sup>

섭적의 역사인식은 당 중엽 이후의 비판사조를 계승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sup>73)</sup> 12-13세기 남송대 현실에서 섭적은 왕안석 신법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통해 긴축재정, 군비축소, 관제개편 및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대대적인 “국가축소”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sup>74)</sup> 다시 말해 그는 북송대 국가주의 개혁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통해서 작고 강한 국가의 플랜을 구체화했다. 정부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통해 그는 국가가 행정규모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더 강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모색했다.

섭적의 정치사상은 진(秦)제국 이후의 변화에 대한 그의 거시적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경전에 제시된 삼대의 이상은 남송대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고대적 사회조건의 산물이라 인식했다. 그의 정치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進卷』의 “民事”에서 그는 “고대(古代)에는 백성(民)과 임금(君)이 하나였으나, 후세에는 백성과 임금이 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sup>75)</sup> 그는 또 고대의 군주는 백성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지배의 대상으로 보았지만<sup>76)</sup>, 후대의 현실에선 백성은 이미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율의 능

72) 유종원 『봉건론』에 대한 북송대 사대부 지식인들의 일반적 입장에 관해선 Jaeyoon Song, “Redefining Good Government”를 참조할 것.

73) 섭적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선 Winston Lo, *The Life and Thought of Yeh Shih* (Gainesville: University Presses of Florida, 1974)를 참조할 것. 섭적의 정치사상에 대한선 Peter K. Bol, “Reconceptualizing the Nation in Southern Song: Some Implications of Ye Shi’s Statecraft Learning,” in *Thought, Political Power, and Social Forces*, Ko-wu Huang, ed. (Taipei: Institute of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2002), 33-64와 Jaeyoon Song, “Critical Confucianism: Ye Shi’s Constitutional Vision,” *The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22(2014), 27-48를 참조할 것.

74) Jaeyoon Song, “Critical Confucianism.”

75) 『葉適集』, 651. “古者民與君爲一, 後世民與君爲二.”

76) 같은 책: “其意以謂民皆不能也.”

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선언한다.<sup>77)</sup>

진대 이후 사회경제의 민간영역이 확대하면서 이미 황제는 만민을 돌보는 목민자로서의 군주 개념은 무력화되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지속적인 토지 사유화의 결과 토지의 분배와 강제 노역에 기초한 정부와 백성의 유기적 통합이 무너지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벗어난 자율적 민간경제가 성장한 결과 관민(官民)이 분리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섭적은 정전제의 이상을 되살리려는 토지 재분배의 시도는 비현실적이고도 무책임한 시대착오일 뿐이라 주장한다. 이미 거상과 대지주는 천하의 다원적 질서 속에서 협치(協治)의 주체가 되었다. 섭적은 상업의 발흥과 민간경제의 형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라 여겼으며, 경제적 엘리트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부의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정부는 대지주 및 거상과 국가의 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합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섭적은 거시적 역사변화를 조망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오늘날 천하의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불평등해졌습니다. (시장의) 관리와 (상품의) 취산과 가격의 조절 권한이 이제는 오로지 임금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민과 거상(巨商)이 (그런 권력을) 나눠 갖게 되었으니, 대체 몇 천 년이나 그러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일시에 빼앗으려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그들이 누리는 사익(私益)을 질시해서 (그 사익을 빼앗아) 국익(國益)으로 돌리려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아, 주공이 이곳에 있다 해도 그런 방법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sup>78)</sup>

섭적은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을 상업경제의 발달에서 찾는다. 상업경제의 발달로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의 모든 영역을 관리·경영하던 고대의 통치방식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부민과 거상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엘리트는 자발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 그

77) 같은 책.

78) 『葉適集』, 659: “今天下之民不齊久矣. 開闢, 歛散, 輕重之權, 不一出於上, 而富人大賈分而有之. 不知其數千百年也. 而遽奪之可也. 嫉其自利而欲爲國利可乎. 嗚呼! 居今之世, 周公固不行是法矣.”

러한 거시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섭적은 소유권의 확보와 사익의 추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부민의 사익 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했다는 논리이다.

섭적은 고대 국가의 정책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대의 현실에서 토지의 사유화 및 토지의 사적 매매는 이미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다. 특히 균전제가 무너진 8세기 중엽 이후 민간경제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전제의 복원이 이미 불가능해졌다. 균전제의 붕괴에서 보듯 정부에 의한 토지의 재분배는 실패로 귀결되었다. 섭적은 그러한 거시적 역사변화를 토지매매를 통해 간명하게 묘사한다.

한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땅을 나눠주는 제도”(授田之制)가 시행되어 임금은 민을 귀속시켰고, “부역을 바치는 제도”(受役之法)가 있어 민은 임금을 모셨습니다. 오늘에 와선,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민은 자유롭게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고, 관은 도리어 민을 위해 토지 계약서를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sup>79)</sup>

섭적은 급속한 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맞춰 군주는 고대적 이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검병지가와 거상이 지배하는 남송대의 사회경제적 현실에서 부민의 사회·통합적 역할은 더욱 커졌다. 반면 지방관들은 “목민(牧民)”의 능력이 상실했다. 지방정부의 대민지배력은 약화되었다. 전농은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며, 소농은 부민의 돈을 빌리고, 빈농은 부민에 의존한다. 조세의 정량을 채우지 못한 서리들도 부민의 경제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부에 의한 검병의 억압은 수많은 송사(訟事)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가주의적 경제 간섭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논리이다. 지방사회에서 부민이 갖는 실제적인 권력을 직시하면서 섭적은 황제를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부민은 주와 현의 밑바탕입니다. 아래와 위 모두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부민은 천자를 위해 어린 백성들을 기르며, (황제를 위해) 공물을 상납합니

<sup>79)</sup> 같은 책, 652: “自漢至唐, 猶有授田之制, 則其君猶有以屬民也. 猶有受役之法, 則其民猶有以事君也. 蓋至於今, 授田之制亡矣. 民自以私相賣易, 而官反爲之司契券而取其直…”

다. 비록 그들이 많은 이익을 취해 재산을 늘려간다 해도, 그들의 근면함과 노고를 고려한다면, 대략 그 정도를 누릴 만합니다. 다만 너무 포악해서 약탈을 일삼는 자라면 관리가 마땅히 가르치고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고 경고해도 안 된다면, 사안에 따라 바로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치게 하면 (그런 횡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관리들이 지레 먼저 (부민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서 구차하게 권위를 세우고 명성을 얻으려 해선 안 될 것입니다. 황제께서 직접 소민들을 양육할 수 없는데, 관리들이 앞 다퉈 부민의 파괴를 일삼는다면, 오히려 지주와 전호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어 불안만 생겨날지니, 이는 결코 좋은 통치가 될 수 없습니다.<sup>80)</sup>

따라서 정전제를 복원하라는 유자들의 주장은 폐기되어야 하며, 검병지가를 억압하려는 속리들의 의도 역시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는 지혜를 발휘하고, 현실을 살펴 법을 세워야 합니다. 폐하께서 진정 제도를 바로 세운다면, 십년 안에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사라질 것이며, 검병 역시 내버려 두되 자연스레 소멸할 것입니다.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서둘러 “살리고 기르는 이익”(生養之利)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천자와 군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대의 정전제는 실행될 수 없으며, 오늘날의 제도 또한 제대로 수립될 수 없을 테니 공허한 담론이 서로를 현혹시킬 것이고, 위아래는 어긋나고 거스를 것입니다. 속리는 비굴해질 것이고, 유자는 높은 지위만을 명예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를 대체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sup>81)</sup>

섭적은 고대의 이상과 후대의 현실을 극명히 대비시켜 국가주의 개혁의 무모함을 고발한다. 그의 표현을 빌면, 속리(俗吏)와 유자(儒者)가 제시하는 극단적 방법을 경계하고 지양해야 한다. 속리는 빈민구제의 명분으로 국가권력

80) 『文獻通考』, 1.25. “然則富人者, 州縣之本, 上下之所賴也。富人爲天子養小民, 又供上用, 雖厚取贏以自封殖, 計其勤勞, 亦略相當矣。迺其豪暴過甚, 兼取無已者, 吏當教戒之; 不可教戒, 隨事而治之, 使之自改則止矣。不宜豫置疾惡於其心, 苟欲以立威取名也。夫人主既未能自養小民, 而吏先以破壞富人爲事, 徒使其客主相怨, 有不安之心, 此非善爲治者也。”

81) 같은 책, 1.26. “故臣以爲儒者復井田之學可罷, 而俗吏抑兼併富人之意可損。因時施智, 觀世立法。誠使制度定於上, 十年之後無甚富甚貧之民, 兼併不抑而自已, 使天下速得生養之利, 此天子與其群臣當汲汲爲之。不然, 古井田終不可行, 今之制度又不復立, 虛談相眩, 上下乖忤, 俗吏以卑爲實, 儒者以高爲名, 天下何從而治哉!”

으로 토지점병을 직접 억제하려 하는 왕안석 류(類)의 국가주의 개혁론자들을 말하며, 유자란 비현실적 복고주의자들을 말한다. 그의 분석대로 당대 중엽 이후 양염의 양세법을 통해 국가는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소유권을 법제화했다. 그 결과 부민은 경제력을 장악했다. 지방사회의 실제적인 지배자로서 다수 인민의 경제적 활동을 책임지게 되었다. 섭적은 그러한 부민이 인민의 적이 아니라 황제를 대신해 인민을 결속하는 지역공동체의 지도층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의 표현대로 부민은 주현(즉, 지방사회)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황제를 대신해 빈농을 부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대의 군주는 부민을 국가의 적으로 몰 것이 아니라 부민과의 연합을 통해 통치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미 확립된 사회경제적 현실의 질서를 교란시키기 보단, 감세 정책을 통해 오히려 부민의 자율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섭적은 경제성장을 통한 부민의 사회적 기여를 긍정한다. 그러한 경제적 현실인식 위에서 그는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표면적으로 한대(漢代) 이래 널리 통용된 이른바 ‘장부어민(藏富於民)’의 이념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송대의 현실에서 섭적의 주장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는 상공업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전통적 “억말후본(抑末厚本)” 혹은 “중본경말(重本輕末)”의 이념에 반기를 든 것이다.<sup>82)</sup> 그의 입장에서 상공업의 발전은 경제적 특화와 물자유통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경제성장은 빈부격차를 야기하지만, 규모경제의 낙수 효과는 전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상공업의 긍정은 사익(私益)추구를 긍정하는 것이다. 사익의 옹호는 결국 사적소유권의 확보로 이어진다.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을 위해선 사회적 재부(財富)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부의 확대를 위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적 특화와 물적 교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상공업의 발달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 위에서 섭적은 사익의 추구를 긍정하고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제창한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 기본책무는 인민이 자발적으로 사익을 증대할 수 있는 생양지리(生養之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섭적의 부민(富民) 옹호론은 결국 도학자들이 일관적으로 견

<sup>82)</sup> 周夢江, 『葉適與永嘉學派』(浙江古籍出版社, 1992), 178.

지했던 유학적 중농주의의 세계관과 대립한다. 탈신화적 역사비판에 근거한 섭적의 경제사상은 근대적 사적소유권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당대(當代)의 “진보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상공업의 활성화, 국가재정의 축소, 정부에 의한 겸병억제 반대, 낮은 세율의 옹호 등에 기초한 섭적의 경제이론은 나아가 재정개혁 준비감축 등 그가 지향했던 국가규모의 축소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sup>83)</sup>

## 6. 마단림의 관점: 토지의 사유화와 경제적 불평등

기존의 학계에서는 흔히 간과되지만, 섭적의 경제사상은 마단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sup>84)</sup> 남송이후 사상사에서 성리학 중심의 단조로운 서술을 극복하기 위해선 섭적에서 마단림으로 이어지는 경제담론의 맥락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문헌통고』에서 마단림은 전부(田賦)를 제1의 주제로 삼았다. 경전, 역사서 및 후대 제현의 논의를 망라한 이 백과전서의 경제교본에서 마단림은 분명하게 스스로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마단림은 고대의 제도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통해 정전제의 복원가능성을 부정한다. 정전제의 복원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마단림은 『周禮』에서 정전제에 관련된 토지분할, 농전과 수리관리의 세목들을 상세히 고찰한다. 그의 역사적 탐구를 통해 정전제의 신화를 해체한다. 그의 탐구에 따르면, 주대(周代)의 정전제는 토지, 인구는 물론, 농민들의 행위패턴과 작업습관까지 고려한 후에 실시되었다. 그의 표현을 빌면, “군주는 여리(閭里)의 이병(利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상세함이 그러했기에 토지를 주고받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다.”<sup>85)</sup>

83) 섭적의 정치사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Jaeyoon Song, “Critical Confucianism: Ye Shi’s Constitutional Vision.”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22(2014), 27-47.

84) 예컨대 侯外廬는 두우, 정초를 거쳐 마단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진보적 사학사상의 계보를 밝히지만, 마단림에 대한 섭적의 영향은 묵과한다. 侯外廬, 『中國思想通史』(北京: 人民出版社, 1957-1963) 4(下), 19章.

85) 같은 책, 1.26: “爲人上者必能備知閭裏之利病, 詳悉如此, 然後授受之際可以無弊.”

무릇 고대의 제왕은 땅을 나누어 통치했으며, (왕기) 밖으로는 공, 후, 백, 자, 남을, (왕기) 안으로는 고경, 대부를 두었으니, 왕이 직접 다스렸던 땅의 면적은 백리에 지나지 않았다. (왕과 제후들) 모두 토지를 세습했고, 백성들을 자식으로 여겼다. 그 때문에 그들이 얻은 전주(田疇)는 정돈될 수 있었고, (농지 사이의) 경계가 정확했고, 정지(井地)는 균등했고, 곡륙은 공평했다. 탐부와 호민은 비굴한 수단으로 법제를 위반할 수 없었다. 탐관오리는 문서를 조작해 정부의 장부를 망칠 수도 없었다.<sup>86)</sup>

섭적과 마찬가지로 마단림은 고대 성왕의 위업을 칭송하지만, 그 제도 자체의 형식보다는 그런 제도를 유기적으로 통합했던 통치의 원리를 고찰한다. 본래 정전제는 서주의 분봉제(分封制)에 입각한 영토의 분할과 지역적 분권통치에 초하고 있다. 소규모의 공동체형 국가에서 봉건제후는 관할지의 지리, 인구 및 풍속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했다. 마단림은 고대의 제도를 복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모한 복고주의의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고대의 제도를 탐구했다. 그는 진대 이후 1,400년의 세월 동안 균전제가 실시되었던 시기는 고작 200여년에 불과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삼대에서 천년 넘는 세월 동안 토지의 재분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문헌통고』의 서문에서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릇 봉건제가 있었기에 정전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삼대에는 천자는 사사로이 천하를 소유할 수 없었다. 진나라가 봉건을 폐기한 후에는 천하가 단 한 사람을 섬기게 되었다. 삼대에는 서인이 전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진나라가 정전을 폐기한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진은 마땅히 땅을 쥐야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았고, 땅을 빼앗아야 할 사람들에게 도리어 땅을 내주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풍습이 오래 지속되었기에 고대 제도의 복원은 실로 지난했다. 봉건제를 복원하려면 대지의 분할이 분쟁을 야기하고, 정전을 복원하려면 백성의 전산을 빼앗아야 하므로 원한과 불평을 불러온다. 바로 이 서생이 (봉건제와 정전제가) 오늘날 실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sup>87)</sup>

86) 같은 책, “蓋古之帝王分土而治, 外而公, 侯, 伯, 子, 男, 內而孤, 卿, 大夫, 所治不過百里之地, 皆世其土, 子其人. 於是取其田疇而伍之, 經界正, 井地均, 穀祿平, 貪夫豪民不能肆力以違法制, 汙吏黠胥不能舞文以亂簿書.”

섭적은 이미 고대의 분봉제가 폐기된 상황에선 정전제가 실행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마단림은 섭적의 논리를 차용해 봉건과 정전의 관계를 다시금 역사적으로 고증했다. 이러한 논리 위에서 마단림은 양염의 양세법을 당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평가한다. 섭적과 마단림은 양염의 양세법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의 사유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빈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부민은 농촌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생적인 빈민구제의 기제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통치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정전제 신화를 해체한 마단림은 진(秦) 제도를 비판한다. 황위를 찬탈한 왕망(王莽, 대략 기원전 45-기원후 23)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그는 진제국의 토지제도가 소수의 지주들과 다수의 빈민층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극단적인 세율의 인하(30분의 1세)로 호족은 더욱 부강해진 반면 백성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는 것이다. 무력해진 다수 인민은 부민의 농지를 경작해 소출의 절반을 나눴지만, 부민은 과도한 지대를 부과해 빈민을 가난으로 내몰았다. 왕망이 왕전(王田) 제도를 도입해서 근본주의적 토지재분배를 시도했지만, 마단림은 그런 복고주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참담한 실패를 면치 못했음에 주목한다.

이어서 마단림은 한(後漢)의 역사가 순열(荀悅, 148-209)의 정전제 옹호론을 소개한다. 순열은 한나라 초기 최소세율(간혹 00.1%)의 시행으로 소수 부민은 혜택을 누렸으나 대다수 인민은 고통을 받았다고 평가한다.<sup>88)</sup> 즉 국가의 경제적 불간섭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층의 예측화를 가중시켰다는 진단이다. 정전제의 복원 기회를 상실한 후한 말의 상화에서 순열은 동중서(董仲舒, 179-104)의 주장처럼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제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했다.<sup>89)</sup> 한편 마단림은 조심스럽게 진제국의 제도사적 기여를 인정한다.

87) 같은 책, 1.28. “蓋有封建足以維持井田故也。三代而上，天下非天子之所得私也；秦廢封建，而始以天下奉一人矣。三代而上，田產非庶人所得私也；秦廢井田，而始捐田產以與百姓矣。秦於其所當予者取之，所當取才予之，然沿襲既久，反古實難。欲復封建，是自割裂其土宇，以啓紛爭；欲復井田，是強奪民之田產以召怨讎，書生之論所以不可行也。”

88) 같은 책, 1.22: “官家之惠，優於三代；豪強之暴，酷於亡秦。”

89) 같은 책.

진대(秦代)에는 정전제가 폐기되어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작하는 땅을 맡겼으며, 토지의 다소는 상관치 않고, 경작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했다. (연나라의) 채택은 말했다. “상군이 정전을 해체해 경작지를 재정비해 천택을 실시했으니 이로써 백성들의 경업(耕業)은 평정을 찾고 그들의 뜻이 통일될 수 있었다. (채택이) 靜과 一이란 표현을 쓴 것에서 주나라의 수전지제가 진대에 이르면 지독하게 혼란되어 경중이 균일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희는 어록에서 “채경의 이 말에서 주제가 진에 이르면 폐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sup>90)</sup>

마단림은 진대 이후 정전제가 폐지되자 낮은 세율도 함께 무너졌고, 그 결과 극심한 증세가 야기되었음을 관찰한다.<sup>91)</sup> 한초의 “휴양생식(休養生息)” 정책은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제공했지만, 낮은 세율과 결부된 정부의 방임정책은 결국 토지경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를 낳았다.<sup>92)</sup> 일면 주희 계열의 도학집단의 주장을 닮아 있지만, 결정적으로 마단림은 양염의 양세법을 긍정한다.

부세(賦稅)가 농지의 면적에 따라야 함은 고금에 변할 수 없는 법이다. 하·은·주 삼대의 공, 조, 철은 전지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었으니 따로 호구에 따라 세금을 걷지는 않았다. 삼대에는 인민에게 땅을 주면서도 따로 호부(戶賦)를 걷지 않았다. 양한(兩漢)은 인민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 호부의 세율을 낮게 유지했다. 북위에서 당 중엽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표면상 토지를 분배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호부를 늘렸다. 토지의 배분은 늘 갈진 못했지만, 이미 높게 올라간 호부를 다시 낮출 수는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양세법의 도입으로 이러한 병폐가 혁파되었다. **어찌 양염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양세법을 폄하할 수 있겠는가?**<sup>93)</sup>

90) 같은 책, 1.27. “至秦人盡廢井田，任民所耕，不計多少，而隨其所占之田以制賦。蔡澤言‘商君決裂井田，廢壤阡陌，以靜百姓之業，而一其志。’夫曰‘靜’，曰‘一’，則可見周授田之制，至秦時必是擾亂無章，輕重不均矣（晦庵《語錄》亦謂：“因蔡澤此語，可見周制至秦不能無弊”）。”

91) 『文獻通考』, 3.64.

92) 같은 책.

93) 같은 책. “蓋賦稅必視田畝，乃古今不可易之法，三代之貢、助、徹，亦只視田而賦之，未嘗別有戶口之賦。蓋雖授人以田，而未嘗別有戶賦者，三代也；不授人以田，而輕其

섭적의 견해에 따르면, 양세법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토지사 유회의 경향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했다. 섭적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는 한편<sup>94)</sup>, 마단림은 “안록산의 난 이후 백성은 산일되고, 국가의 장부는 쓸모없는 종이장이 되었으며, 내버려진 농토는 황폐해진”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시급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우량한 세제개혁이라 평가한다.<sup>95)</sup>

또한 마단림은 한대 순열의 토지 개혁론이 북송대의 소순의 한전론(限田論)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소순은 정전제의 폐지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열 명의 농부가 한 명의 대지주와 곡물 소출량을 양분했으며, 그 결과 북송의 현실에서 실제로 대지주가 떠안았던 조세부담은 실제로는 20분의 1보다도 낮다고 개탄한다. 소순은 국가주도의 토지 압류는 부민에 대한 무익한 ‘계급전쟁’을 야기할 것이므로 정전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소순의 관찰에 따르면, 주대의 정전제는 대토지를 정비해 최소단위의 정지(井地)로 구획 짓고, 단위면적의 경지를 연결하는 정교한 수리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소순은 북송대의 현실에서는 정부가 부민으로 하여금 사유지의 일부를 헌납 받아 공유지를 만든다 해도 정전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소순의 관점에서 정전제는 문명의 초기 국가가 인민을 동원해 대토지를 개간했을 때 도입되었던 고대적 제도일 뿐이었다. 소순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했다. 토지 소유권의 제한만이 고대 정전제의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 보았던 것이다.<sup>96)</sup>

소순의 논리를 상세히 보여주면서도 마단림은 한전론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마단림은 섭적의 논설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주장한다. 부민의 사회적 기능과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법만이 난마처럼 꼬인 토지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보았던 것이다. 그는 『文獻通考』 「田賦」의 결론에서 스스로 섭적의 사상을 계승했음을 말한다.

戶賦者，兩漢也。因授田之名，而重其戶賦，田之授否不常，而賦之重者已不可復輕，遂至重爲民病，則自魏至唐之中葉是也。自兩稅之法行，而此弊革矣，豈可以其出於楊炎而少之乎？”

94) 같은 책, 2.49.

95) 같은 책, 3.65.

96) George Hatch, “Su Hsun’s Pragmatic Statecraft,” *Ordering the World*, 70-71.

秦나라가 정전제를 폐기한 후 후대의 군자들은 언제나 군주들이 삼대의 제도를 되살려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 못한 채로 호강(豪強)들이 앉은 채로 겸병의 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해왔다고 한탄하였다. 그들의 논설이 진정 옳다. 고금을 되짚어 이득과 병폐를 깊이 살펴보고 나니 老泉(소순)공과 水心(섭적)공이 가장 정확하고 절실하다. 나는 水心の 이론을 확충해서 이렇게 말하노라. “정전을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sup>97)</sup>

섭적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단림은 수천 년 지속되어 온 전부 논쟁에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그는 역사적 탐구를 통해 유가경전에 제시된 고대의 이상제도를 해체하고, 도학자들의 퇴행적 도덕사관을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그런 관점에서 유종원, 두우에서 섭적으로 이어지는 “진보적 사학사상”은 마단림을 통해 다시금 집대성되었다 할 수 있다. 둘째, 섭적을 이어 마단림은 당송변혁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당 중엽 새로 일어난 토지 사유화 경향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토지의 사적소유화를 법제화한 양염의 양세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셋째, 마단림은 섭적의 논리를 차용해 부민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토지재분배의 요구에 반대하고, 토지의 사적소유를 이론적으로 합리화한다.

전통적인 경학적 이상주의와 퇴행적 역사관을 비판하고 토지의 사적소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점에서 섭적과 마단림의 토지사상은 중국사상사의 획기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주희 계열의 도학집단과 대립했던 영가학파의 영수 섭적의 세계관이 마단림을 거쳐 후대로 명맥을 이어간 사상적 전승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선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결론: 경세담론의 사상사적 의의

지금껏 남송대 전부(田賦) 논쟁에 대한 개괄적 논의와 함께 토지의 소유 및 분배에 관한 주희, 섭적, 마단림 세 사람의 입장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97) 같은 책, 1.26. “按：自秦廢井田之後，後之君子每慨歎世主不能復三代之法，以利其民，而使豪強坐擅兼併之利，其說固正矣。至於斟酌古今，究竟利病，則莫如老泉、水心二公之論最爲確實。愚又因水心之論而廣之曰：“井田未易言也。”

전부(田賦)에 관한 주희의 기본적 입장은 정전제 찬양, 균전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토지겸병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일관된 비판, 토지제도의 정비를 위한 국가개입의 요구 및 사적 소유권의 부분적 인정 등에서 드러난다. 그는 토지공유의 이상과 균등배분의 이념을 부르짖었지만, 정전제의 복원가능성에 대해선 회의했다. 그런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는 남송의 현실에 맞는 대안으로 경계법의 재실시를 주장했다. 전부(田賦)의 경세담론에서 주희는 국가 개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반면 그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주장함으로써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일정 정도 인정했다. 이러한 주희의 이율배반은 이상적 복고주의와 실용적 방임주의 사이에서 중도노선을 걸었던 그의 성리학적 중농주의를 보여준다.

섭적은 정부의 경제적 불간섭을 이론화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그는 당송변혁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대규모의 상업경제의 확대과정을 직시했다. 그의 입장에서 정전제는 고대적 한계 속에서 도입되었던 고대의 토지제도일 뿐이며, 균전제는 북위에서 당초까지 시도되었던 한시적인 토지균분의 제도일 뿐이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상업경제의 성장에 따라 토지의 사유화는 불가역의 현실이 되었으며, 그 결과 부민은 사회·경제적 엘리트로서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섭적은, 국가간섭에 의한 토지의 재분배는 이미 수천 년 간 지속되어 온 자생적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송대 전부(田賦)의 공공논쟁에서 그는 정부간섭의 최소화와 민간주체의 자율성을 확대를 좋은 통치의 근본이라 주장했다. 무엇보다 섭적은 사적소유권의 확대를 강조했다. 민간경제의 확대가 작고도 강한 국가의 기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섭적은 남송대 경세가들 중에서 근대민법의 소유권 사상에 가장 근접했던 당시의 진보적 사상가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불간섭과 민간자율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부민의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는 점에서 그는 보수주의 사상가로 분류될 수도 있을 듯하다.

마단림은 『문헌통고』에서 경학주석서, 역사서 및 고급관료 및 경세가들의 저서를 경세담론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전부(田賦)에 관한 통고(通考)를 통해 그는 제도사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했다. 역대의 경세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단림은 남송대의 경세논쟁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희와 섭적의 사상을 남송대 공공논쟁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희와 섭적을 비교하면서 마단림은 섭적의 입장에 분명히 동조하고 있다. 섭적의 논리를 차용해 마단림은 경학적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회의를 견지했다. 고대의 제도를 이상화하는 대신 그는 제도사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했다. 그는 정전제의 복원을 주장하는 복고론자들의 퇴행적 이상주의를 경계하고, 균전제의 붕괴를 개탄하는 성리학적 중농주의와 결별했다. 무엇보다 그는 후대 역사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역사의 시행착오를 밝혀려 했다. 후대의 토지제도에 관해서 그는 상양 법가개혁의 성과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균전제의 붕괴와 양세법의 도입을 역사의 필연이라 설명했으며, 부민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sup>98)</sup>

지금까지 살펴 본 전부(田賦)의 공공논쟁은 남송대 사상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남송대 전부 논쟁은 토지세에 머물지 않고 소유와 분배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철학적 반성으로 나아갔다. 공공정책의 정당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경서, 역사서 및 선대의 입법사례를 모두 동원해 다양한 공공철학을 구성해갔다. 일례로 마단림의 『문헌통고』는 전부(田賦)에서 출발해서 통화정책에 관한 전폐(錢幣) 논쟁, 정부의 대민조직과 관련된 호구(戶口) 논쟁, 관료조직의 운영원칙을 밝힌 직역(職役) 및 직관(職官) 논쟁, 상품세의 징수 및 관부의 전매에 관련된 정각(征權) 논쟁, 조세의 징수 및 국가재정의 운영원칙에 관한 국용(國用) 논쟁, 관리의 선발과 임용에 관한 선거(選舉) 논쟁 등을 상세히 정리·분석하고 있다. 공공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다채로운 경제담론을 형성해갔던 것이다.

중국철학사에서 남송대는 과도하리만큼 성리학의 발흥기로만 주목받아 왔다. 학계의 일반론에 따르면, 11세기 후반 왕안석의 신법개혁에 밀려 낙양에 좌천된 구법당의 영수들은 국가주의 제도개혁의 한계를 절감하고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와 시름하면서 이른바 “내향적 전환(internal turn)”의 시초를 닦았다.<sup>99)</sup> 그런 사상사적 전환은 이후 남송대 주희(朱熹; 1130-1200)의 성리학으

98) 마단림은 당시 일반론과는 반대로 양염이 당대의 전통적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백성을 진정시켰다고 주장한다 (『文獻通考』, 3.59).

99) 司馬光 (1019-1086), 程頤 (1033-1107), 蘇軾 (1037-1101) 등을 꼽을 수 있다.

로 만개했다.<sup>100)</sup> 그 결과 남송대는 일반적으로 이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의 시대라 여겨진다. “내향적 전환”은 그러나 남송대 사상사의 다양한 갈래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남송대 사대부들이 사서(四書) 중심의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에 몰두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事實)이지만, 그들을 “탈정치적 관념론자들”(apolitical idealists)로 단정하는 것은 기껏 관념사적 오류일 뿐이다.<sup>101)</sup>

『大學』 “八條目”에 제시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가르침을 따라 남송 이후의 사대부 지식인들은 내면 수양 못지않게 경제와 치국의 방도를 깊이 탐구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구체적으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제도를 입안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의 제도 논쟁은 경학 주석서, 역사비평 및 근현대사 비판을 통해 공공철학으로 심화되었다.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야말로 전통시대 중국 지식인들을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동기였다.

이제 개념의 내재적 논리에 국한된 협애한 관념사의 한계를 벗어나 공공정책에 대한 경제담론으로 중국철학사의 연구방향을 선회할 때가 되었다. 전통시대 중국의 경제담론에 관한 연구는 사상의 현실적 맥락을 밝히고 구체적인 제도의 진화과정을 고찰하는 역사적 탐구를 요구한다. 마단림의 일갈대로 “제도를 고찰하고, 현장을 심의하고, 폭넓게 (문헌을) 조사해 철저히 (그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통유(通儒)의 기본 과제이기 때문이다.<sup>102)</sup>

<sup>100)</sup> 전 미국 프린스턴 대학 리우 쑤지앤(劉子健) 교수의 입장. James T.C. Liu, *China Turning Inward: Intellectual-Political changes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사마광(司馬光, 1019-1086), 정이(程頤, 1033-1107), 소식(蘇軾, 1037-1101) 등이 대표적이다.

<sup>101)</sup> 위잉쓰는 남송대 1160년대에서 122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관(出官)했던 도학(道學) 계열의 사대부들의 정치적 활동에 주목하면서 남송대의 내향화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呂英時, 『朱熹의歷史世界: 宋代士大夫政治文化的研究』(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4), 400-411쪽.

<sup>102)</sup> 『文獻通考』 「自序」 1: “考制度, 審憲章, 博聞而強識之, 固通儒事也.”

## 참고문헌

## 1. 한문원서

- 班固 (32-92)撰. 『漢書』. 1964.  
 朱彝尊 (1629-1709)撰. 『經義考』. 北京: 中華書局, 1998.  
 孫希旦 (1736-1784)撰. 『禮記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9.  
 呂祖謙 (1137-1181)撰. 『歷代制度詳說』. 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馬端臨 (약 1245-1322)撰. 『文獻通考』. 北京: 中華書局, 2011.  
 『宋史』. 脫脫 (1313-1355) 外. 北京: 中華書局, 1977.  
 林之奇(1112-1176)撰. 『尚書全解』. 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孔穎達 (574-648)撰. 『尚書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朱熹(1130-1200). 『四書章句集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葉適 (1150-1223). 『葉適集』. 中華書局, 1961.  
 王與之(약 13세기). 『周禮訂義』. 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1983.

## 2. 동아시아 연구서

- 徐公喜/王衛紅, “朱熹土地所有權思想” 『朱子學刊』, 9(1998.1): 140-156.  
 徐喜辰. 『井田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趙岡/陳鐘毅. 『中國土地制度史』.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2.  
 王德毅, “李椿年與南宋土地經界.” 『宋史研究集』 7, 441-480.  
 周藤吉之. 『中國土地制度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社, 1954.  
 東一夫. 『王安石新法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1970.  
 堀敏一. 均田制の研究: 中國古代國家の土地政策と土地所有制. 東京: 岩波書店, 1975.  
 金景芳. 『論井田制度』. 濟南: 齊魯書社, 1982, 1982.  
 宮崎市定. 『中國史』. 東京: 岩波書店, 1977.  
 漆俠. 『中國經濟通史: 宋代經濟卷』.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9.  
 呂英時, 『朱熹的歷史世界: 宋代士大夫政治文化的研究』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4).

## 3. 구미연구서

- Bol, Peter K. “Reconceptualizing the Nation in Southern Song: Some Implications of Ye Shi’s Statecraft Learning,” in *Thought, Political Power, and Social Forces*, edited by Ko-wu Huang, 33-64. Taipei: Institute of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2002.
- \_\_\_\_\_. “Wang Anshi and the *Zhouli*.” In *Statecraft and Classical Learning: the Rituals of Zhou in East Asian History*, edited by Benjamin Elman and Martin Kern, 229-251. Leiden, Boston: Brill, 2010.
- \_\_\_\_\_. *Neo-Confucianism in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 Chan, Hok-lam. “Ma Tuan-lin’s Historical Thought.” In *Yüan Thought: Chinese Thought and Religion under the Mongols*, edited by Hok-lam Chan and Wm. Theodore de Bary, 27-87.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2.
- Chen, Chi-yun, *Hsün Yüeh (A.D. 148-209): the Life and Reflections of an Early Medieval Confucian*.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De Weert, Hilde. *Competition over Content: Negotiating Standards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Imperial China (1127-1279)*. Cambridge, MA: Harvard Univ. Asia Center, 2007.
- Ebrey, Patricia Buckley.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패트리샤 이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이동진, 윤미경 옮김. 서울: 시공사, 2008).
- Elvin, Mark.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 Golas, Peter J. “Rural China in the Song.” *Journal of Asian Studies* 39.2 (1980), 291-325.
- Hatch, George. “Su Hsun’s Pragmatic Statecraft.” In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edited by

- Robert Hymes and Conrad Schirokauer, 59-75.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 Hymes, Robert and Schirokauer, Conrad, edited.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 \_\_\_\_\_. "Introduction." In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edited by Robert Hymes and Conrad Schirokauer, 1-58.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 Kamachi, Noriko. "Feudalism or Absolute Monarchism?: Japanese Discourse on the Nature of State and Society." *Modern China*, 16.3 (1990), 330-370.
- The New and the Multiple: Sung Senses of the Past*, edited by Thomas H. C. Lee, 163-200.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2004.
- Liu, James T.C. "How did a Neo-Confucian school become the state orthodoxy?" *Philosophy East and West*, 23.4 (1973), 483-505.
- \_\_\_\_\_. *China Turning Inward: Intellectual-Political changes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Lo, Winston. *The Life and Thought of Yeh Shih*. Gainesville: University Presses of Florida, 1974.
- McMullen, David L. *State and Scholars in T'ang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Palais, James B. "Land Tenure in Korea: Tenth to Twelfth Centur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1. 4 (1982-83), 3-72.
- Pulleyblank, Edwin.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2).
- \_\_\_\_\_. "Neo-Confucianism and Neo-Legalism in T'ang Intellectual Life, 755-805." In *The Confucian Persuasion*, 77-14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 Robert Hymes, "Moral duty and self-regulating process in Southern Song views of famine relief." In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edited by Robert Hymes and Conrad Schirokauer, 280-309.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 Sandel, Michael J.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Smith, Paul. “Shen-tsung’s Reign and the New Policies of Wang An-shih, 1067-1085.”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5-1*, edited by Denis Twitchett and Paul Smith, 347-483.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Song, Jaeyoon. “Tension and Balance: Changes of Constitutional Schemes in Southern Song Commentaries on the Rituals of Zhou.” In *Statecraft and Classical Learning: the Rituals of Zhou in East Asian History*, edited by Benjamin Elman and Martin Kern, 252-276. Leiden, Boston: Brill, 2010.
- \_\_\_\_\_. “Redefining Good Government: Shift Paradigms in Song Dynasty (960-1279) Discourse on *Fengjian*.” *T’oung Pao* 97 (2011), 301-343.
- \_\_\_\_\_. “Critical Confucianism: Ye Shi’s Constitutional Vision.”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22(2014), 27-47.
- \_\_\_\_\_. *Traces of Grand Peace: Classics and State Activism in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in press.
- Tu Wei-ming. “Towards an Understanding of Liu Yin’s Confucian Eremitism.” *Yüan Thought: Chinese Thought and Religion under the Mongols*, edited by Hok-lam Chan and Wm. Theodore de Bary, 233-277.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2.
- Twitchett, Denis C. *Financial administration under the T’ang dynasty*. Cambridge Univ. Press, 1970.
- Twitchett, Denis C. and Fairbank, John K., edit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1*.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Von Faulkenhausen, Lothar. *Chinese Society in the Age of Confucius*

(1000-250 BC): *The Archaeological Evidence*. Los Angeles: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UCLA, 2006

Von Glahn, Richard. "Community and Welfare: Chu Hsi's Community Granary in Theory and Practice." In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edited by Robert Hymes and Conrad Schirokauer, 221-254.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Wilkinson, Endymion. *Chinese History: A New Manua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2.

< Abstract >

Public-philosophical Debates on Land Taxes:  
Statecraft Discourses on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Distributive  
Justice in 12th-13th Century China

Jaeyoon Song  
(McMast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statecraft debates on land taxes in 12th-13th century China into a public philosophy on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Existing studies on Chinese intellectual history has illuminated the Southern Song period as the formative era of Neo-Confucianism, and thereby focused rather excessively on its moral and ethical aspects. This article shows that Southern Song statecraft debates evolved into public philosophy through a proliferation of writings on government such as commentaries on the Confucian Classics, historical works, memorials, and policy proposals. More specifically, public discourses on the land tenure system and land taxes in 12th-13th century China established their political philosophical views on private property and distributive justice.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Zhu Xi (1130-1200), Ye Shi (1150-1223) and Ma Duanlin's (ca.1245-1322) views regarding the privatization of land and distributive justice, this article inquires into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ost influential schools of statecraft in 12th-13th century China; Zhu Xi's Neo-Confucian physiocracy vs. Ye Shi's utilitarian non-interventionism.

Key words: land taxes, public philosophy, statecraft, ordering the world, statecraft discourse, Confucian Classics, Classical Learning, Southern Song, intellectual history, Zhu Xi, Ye Shi, Yang Yan, Ma Duanlin, Dual Tax Law, the well-field system, the equitable-field system